

개호서비스 이용에 관련된 흐름

가입자(피보험인)

※외국 국적을 가진 분으로 3개월 이상 체재하는 분, 특별영주자인 분 등은 포함됩니다.

【제1호 피보험자】 65세 이상인 분

【제2호 피보험자】 40세부터 64세까지의 분으로서 의료보험 가입자(※자세한 내용은 5페이지 참조)

구시정촌 또는 지역포괄지원센터의 창구에 상담

기본 체크리스트

요개호(요지원) 인정

요개호 1~5

요지원 1:2

기본 체크리스트 해당
(요개호(요지원)
인정 비해당)

비해당

거택서비스 계획
※시설서비스 계획은
시설이 작성

개호예방서비스 계획

개호예방
케어매니지먼트

개호급부

【거택서비스】
·방문개호
·통소개호 등

【지역밀착형 서비스】
·소규모 다기능형 거택개호
·인지증(치매) 대응형
공동생활개호 등

【시설서비스】
·개호노인복지시설
(특별양호노인홈)
·개호노인보건시설 등

각 서비스에
대한 설명은
13페이지부터

각 서비스에
대한 설명은
17페이지부터

예방급부

【거택서비스】
·개호예방방문개호
·개호예방통소재활치료
등

【지역밀착형
개호예방서비스】
·개호예방 소규모
다기능형 거택개호
·개호예방 인지증(치매)
대응형 공동생활개호 등

각 서비스에
대한 설명은
22페이지로

개호예방·생활지원서비스사업

1 방문형·통소형 서비스 2 생활지원서비스

※서비스 내용은 구시정촌마다 다릅니다.

※거택서비스 계획 또는 개호예방서비스 계획 작성 시 병용을 희망할 수 있습니다.

※요개호자의 경우, 개호 급부에 관한 서비스를 받기 전부터 구시정촌의 보조로 시행되는 방문형
·통소형 서비스 등을 지속해서 이용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.

일반개호예방사업

1 개호예방보급개발사업 2 지역개호예방활동지원사업 3 지역재활치료활동지원사업

※서비스 내용은 구시정촌마다 다릅니다.

※모든 고령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※위 그림은 일반적인 개호보험 이용 절차를 나타낸 것입니다.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구시정촌에 문의하십시오.